

2019년 학사 관련 규정 변경 주요내용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학 칙	<p>제41조의3(졸업유예) ①제4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p>	<p>제41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제4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p>																			
	<p>제3조(등록)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단위로 징수하되,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도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이하 졸업제외자라 한다)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잔여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개설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선등록 후 다음 학기로 인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학 점</th> <th style="width: 70%;">납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3학점까지</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6</td> </tr> <tr> <td>4~6학점까지</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3</td> </tr> <tr> <td>7~9학점까지</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2</td> </tr> <tr> <td>10학점 이상</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td> </tr> </tbody> </table>	학 점	납부금액	1~3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6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9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p>제3조(등록)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단위로 징수하되,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도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이하 졸업제외자라 한다)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개설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선등록 후 다음 학기로 인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학 점</th> <th style="width: 70%;">납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5 ~ 4학점 미만</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6</td> </tr> <tr> <td>4 ~ 7학점 미만</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3</td> </tr> <tr> <td>7 ~ 10학점 미만</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1/2</td> </tr> <tr> <td>10학점 이상</td> <td>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td> </tr> </tbody> </table>	학 점	납부금액	0.5 ~ 4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 ~ 7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 ~ 10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학 점	납부금액																				
1~3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6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9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학 점	납부금액																				
0.5 ~ 4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 ~ 7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 ~ 10학점 미만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학 사 비 예 규 정	<p>제33조(휴학기간) ②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및 전역일로부터 복학할 때까지의 기간과 임신, 출산, 육아, 창업의 사유로 인한 2학기 이내는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창업유지 자격을 갖춘 창업휴학생은 2학기를 추가하여 총 4학기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입학 당해학기에는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휴학할 수 없다.</p>	<p>제33조(휴학기간) ②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및 전역일로부터 복학할 때까지의 기간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4학기 이내, 창업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2학기 이내로 하되 창업유지 자격을 갖춘 창업휴학생은 2학기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당해학기에는 군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휴학할 수 없다.</p>																			
	<p>제37조의2(휴학자 및 퇴학자 성적처리) ①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입대 및 자퇴한자의 성적은 인정한다.</p>	<p>제37조의2(휴학자 및 퇴학자 성적처리) ①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휴학자 및 자퇴한자의 성적은 인정한다.</p>																			
	<p>제40조(수료) ①제39조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수료유예자’로 하고, 3년간의 수료유예기간을 둔다. ② <신 설> ③ <신 설> ④ <신 설></p>	<p>제40조(수료) ①제39조의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졸업이 불가한 자를 ‘수료유예자’로 하고, 3년간의 수료유예기간을 둔다. ②수료유예기간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③수료유예자는 학기초과 재학생으로서 입대휴학, 육아휴학, 자퇴 신청만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수료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수료유예기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료’로 처리하고 수료증을 교부한다.</p>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사 이 포 기 관 인 사 정	⑤ <신 설> <2019.02월 신설 예정>	⑤수료자가 소정의 기간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제7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등) ①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수강할 경우 해당교수는 사전 신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후 최종 성적평가 시 출석, 과제물,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성적평가 공정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속 학과(부)장이 부모일 경우 소속 내 다른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기 ①~②항을 위반한 교원은 총장의 경고장을 부여하고, 교원업적평가 시 반영한다.
	제12조(수업 운영) ③<2019.02월 신설 예정>	제12조(수업 운영) ③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